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려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취업영주권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

은행 잔고 증명서, 직원 임금 지급 기록 등으로 대체 가능

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매니저로 고용할 직원을 위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 영주권 두 번째 단계에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법인세, 연례보고서, 혹은 회계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세 상 임금 지급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연례보고서는 없고 회계감사보고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최근에 재정비된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들이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증거자료인, 법인세, 연례보고서, 혹은 회계감사 자료 외에 어떤 다른 자료들로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취업영주권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주허가

서 청원서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며,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기간은 우선순위 날짜부터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이다. 이는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고용주는 영주권 승인이 된 후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데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기초 증거자료는, 법인세, 연례보고서, 혹은 회계감사자료로, 이 세 가지 중 한 개의 자료에서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금액이 순수이득 혹은 유동 자산으로 보이면 된다. 혹은, 영주권의 수혜자가 될 직원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현재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과 같거나 높아도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입증이 된다.

하지만, 위에 적힌 기초 자료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겠다. 먼저, 은행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우선순위 날짜부터 모든 잔고 증명서를 제출

하여 은행에 있는 금액이 다른 곳에 지급될 의무가 없는 금액임을 입증하여 충분한 현금 자산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 형태의 고용주는 개인 자산까지 포함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예금 등도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데 포함할 수 있다.

혹은, 고용주의 현재 고용 상황을 제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다. 현재 고용된 직원의 수, 직원들의 고용 기간과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 등의 전반적인 고용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 지급 기록을 제출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대체할 것이며, 대체될 직원의 임금이 영주권을 받은 직원의 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면 현재 임금 지급 기록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신용한도액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하게 된다. 만일 대출 한도액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대출 금액이 사용 가능하다는 증빙서류와 이 금액이 대출되었을지라도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추가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 법인세, 연례보고서 또는 회계감사자료에서 요구되는 금액이 입증된다면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입증된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현재 고용되어 있고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로 임금 지급 능력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이민국은 고용주의 총 매출, 전체 직원의 수와 지급된 임금의 총액, 고용주의 평판과 사업이 운영된 기간과 성장 기록, 재정 상황이 악화한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도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nenlaw.com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취업영주권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

은행 잔고 증명서, 직원 임금 지급 기록 등으로 대체 가능

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매니저로 고용할 직원을 위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 영주권 두 번째 단계에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법인세, 연례보고서, 혹은 회계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세 상 임금 지급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연례보고서는 없고 회계감사보고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최근에 재정비된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들이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증거자료인, 법인세, 연례보고서, 혹은 회계감사 자료 외에 어떤 다른 자료들로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취업영주권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주허가

서 청원서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며,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기간은 우선순위 날짜부터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이다. 이는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고용주는 영주권 승인이 된 후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데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기초 증거자료는, 법인세, 연례보고서, 혹은 회계감사자료로, 이 세 가지 중 한 개의 자료에서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금액이 순수이득 혹은 유동 자산으로 보이면 된다. 혹은, 영주권의 수혜자가 될 직원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현재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과 같거나 높아도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입증이 된다.

하지만, 위에 적힌 기초 자료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겠다. 먼저, 은행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우선순위 날짜부터 모든 잔고 증명서를 제출

하여 은행에 있는 금액이 다른 곳에 지급될 의무가 없는 금액임을 입증하여 충분한 현금 자산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 형태의 고용주는 개인 자산까지 포함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예금 등도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데 포함할 수 있다.

혹은, 고용주의 현재 고용 상황을 제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다. 현재 고용된 직원의 수, 직원들의 고용 기간과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 등의 전반적인 고용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 지급 기록을 제출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대체할 것이며, 대체될 직원의 임금이 영주권을 받은 직원의 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면 현재 임금 지급 기록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신용한도액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하게 된다. 만일 대출 한도액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대출 금액이 사용 가능하다는 증빙서류와 이 금액이 대출되었을지라도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추가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 법인세, 연례보고서 또는 회계감사자료에서 요구되는 금액이 입증된다면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입증된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현재 고용되어 있고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로 임금 지급 능력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이민국은 고용주의 총 매출, 전체 직원의 수와 지급된 임금의 총액, 고용주의 평판과 사업이 운영된 기간과 성장 기록, 재정 상황이 악화한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도 있다. 212-868-2200, 718-360-0316 www.soneunlaw.com